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 및 의견 제시 기회 안내

개정 공고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CITYFHEPS 신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새로운 10장을 포함하기 위해 뉴욕시 규정 제68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과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른 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기존 뉴욕주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Family Homelessness &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FHEPS)과 보다 긴밀하게 도시 임대료 지원을 조정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0분, 맨해튼의 125 Worth Street, 2층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구는 Lafayette Street에 있습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rules.cityofnewyork.us>.
- **이메일.** 서면 의견서를 NYCRules@hra.nyc.gov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에 "CITYFHEPS"를 포함시키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본인이 CITYFHEPS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 **팩스.** 의견은 917-639-0413번에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CITYFHEPS"를 포함시키십시오.
- **공청회에서의 발언.** 공청회에서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 제시를 원하실 경우, 발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청회 시작 전에 929-221-669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1일 당일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3분간 발언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 시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18년 8월 21일입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 장소에서 외국어 통역사, 수화 통역사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기 주소로 서면으로 알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929-221-6690번으로 전화하여 알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2018년 8월 14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 편의 옵션은 휠체어나 기타 이동 장치입니다. 장애인 편의에 관한 기타 요청사항은 HRA Rules 담당자에게 2018년 8월 14일까지 위에 설명된 대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정에 관하여 제시된 의견들은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수일 내에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제출된 모든 의견, 서신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사본은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본 HRA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법령의 603절과 1043절, 뉴욕 사회복지법의 34, 56, 61, 62, 77 및 131-a절은 HRA가 이 제안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HRA의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의 규정은 뉴욕시 자치 단체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의 제68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규정 입안 또는 개정 시,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반드시 뉴욕시 법령의 1043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뉴욕시 법령의 1043절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규정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기술

뉴욕시 법령의 603절과 1043절, 뉴욕 사회 복지법의 34, 56, 61, 62, 77 및 131-a절은 HRA가 이 제안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배경

2014년 9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HS) 및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보호소에서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거주(LINC) I, II 및 I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어서 보호소에 거주하는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LINC IV 및 V 프로그램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이사를 올 수 있는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주는 LINC VI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밖에도 뉴욕시 가족 보호소 퇴소 지원 프로그램(City Family Exit Plan Supplement Program, CITYFEPS), 특별 퇴소 및 예방 보조(Special Exit and Prevention Supplement, SEPS) 프로그램 및 HRA HOME 세입자 기반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HRA HOME 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Program, HRA HOME TBRA)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시 주택 마련 사업과 함께 8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보호소를 떠나 보금자리를 찾거나 다시는 보호소를 찾아오지 않게 도왔습니다.

2017년 9월, *Tejada v. Roberts*, 색인 번호 453245/2015(Sup. NY 카운티)에 대해 법원은 뉴욕주 가족 퇴거 방지 보조금(New York State Family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FEPS) 프로그램을 뉴욕주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Family Homelessness &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FHEPS)이라는 임대료 보조 수준이 높은 확장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RA의 CITYFEPS 프로그램의 가족 중 대다수와 LINC III 프로그램의 가족 대부분은 2017년 12월 FHEPS로 이관되었습니다.

보호소에 입소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뉴욕시 자금으로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뉴욕시 임대료 지원을 뉴욕주 FHEPS와 보다 긴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HRA는 기존 LINC I, II, IV 및 V 프로그램, SEPS 프로그램 및 LINC III 및 CITYFEPS 프로그램의 나머지 것들을 대체하는 능률적인 단일 프로그램인 CITYFHEPS를 제안합니다. HRA는 소득 차별과 주택 시장에서 보조금 증서에 대한 저항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능률적인 프로그램이 이 목표를 앞당길 것입니다.

현재 CITYFHEPS의 최초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시 임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구는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CITYFHEPS와 함께 세대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다른 시 임대 보조

금을 받는 가구는 CITYFHEPS로 이관되고 기존 프로그램은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신규 가구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¹ LINC VI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LINC, CITYFEPS 및 SE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는 소득 자격이 있고 LINC, CITYFEPS 또는 SEPS 임대료 지원이 현재 적용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하는 한 CITYFHEPS 프로그램으로 이전됩니다(또는, 신축 세대로 이사하도록 HRA로부터 승인을 받음).²

조항 요약

이 새로운 10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 신규 CITYFHEPS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정의를 명시합니다.
- 도시 거주자들의 자격 요건을 수립합니다. 이들은 가구가 보호소에 있는지 여부(우선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 HRA가 보호소로 입소하지 않게 돕거나 이미 보호소에 입소한 가구의 체류 기간을 단축시키는 추천을 승인하게 될 "CITYFHEPS 자격 프로그램"을 지명할 수 있게 합니다.
- 각종 주택에 대한 최대 월 임대료 및 임대료 지원 금액을 명시합니다. 최대 아파트 임대료는 뉴욕시 임대 가이드라인 위원회(NYC Rent Guidelines Board)에서 정한 연간 임대료 인상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 특정 상황에서 갱신을 5년 이상 허용하는 등 프로그램 첫 해 이후의 갱신 기준을 설정합니다.
- 상황이 바뀌면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LINC, SEPS 및 CITYFEPS)에서 새로운 CITYFHEPS로의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와 참여자의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 검토 회의 및 이의 제기 과정, 그리고 HRA가 대기자 명단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의 각종 추가 사항을 명시합니다.

새 자료에는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10장을 포함하는 뉴욕시 규정 제68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¹ 프로그램이 내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² 현재 LINC VI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이 있는 한 해당 프로그램에서 계속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LINC VI에는 신규 가구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호스트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HRA가 동시에 다른 규정을 제안하는 Pathway Home이라는 유사 프로그램에 신청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10-01 정의.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ACS"는 뉴욕시 아동 복지부(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의 약어이다.

(b) "성인 가구원"은 연령이 21세 이상인 가구원 또는 21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는 경우 연령이 18세에서 20세인 가구원을 말한다.

(c) "아파트"는 SRO가 아닌 개인 주택을 의미한다.

(d) "CITYFEPS"는 본 타이틀의 8장 A항에 따라 수립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 "CITYFHEPS"는 본 장에서 기술한 CITYFHEPS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f) "CITYFHEPS 유자격 프로그램"은 HRA가 HRA 또는 DHS 보호소로 입소하지 못하게 하거나, HRA 또는 DHS 보호소에서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HRA가 CITYFHEPS에 대한 추천을 수락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장이 지정한 시 프로그램이다. CITYFHEPS 유자격 프로그램에는 국장이 향후 지정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외에도 (1) 가족 연합, 보존 또는 독립적 생활을 위한 ACS 계획을 촉진시키는 ACS의 추천, (2) 3분기 주택 대책반의 추천, (3) DYCD의 추천, 또는 (4) 뉴욕시 재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의 추천이 포함된다.

(g)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은 본 장에 의거해 이뤄진 임대료 지급을 의미한다.

(h) "CITYFHEPS 세대"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이 본 장에 따라 적용되는 주거 단위를 말한다.

(i) "국장"은 DSS 국장 또는 국장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j) "DHS"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를 의미한다.

(k) "DHS 가족 보호소"는 DHS가 운영하거나 또는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아동 또는 성인 가족이 있는 가족을 위한 보호 시설이다.

(l) "DHS 독신 성인 보호소"란 DHS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독신 성인을 위한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m) "DYCD"는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를 의미한다.

(n) "근로 소득"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1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 및 산출된다. 단, 이 절의 (v)항 및 (ss)항에서 정의된 JTP 프로그램 및 SYEP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o) "연방 장애인 혜택"은 연방 사회 보장법 타이틀 II에 따른 사회 보장 장애 보험 혜택, 연방 사회 보장법 타이틀 XVI에 따른 생활 보조금(SSI), 미국 연방 법전 타이틀 38 II부 11장 II항 또는 IV항에 의거 직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 또는 미국 연방 법전 II부 15장 II항에 따른 서비스 연계 장애 연금을 포함한다.

(p) "FHEPS"는 뉴욕주 가족 퇴거 방지 보조금(New York State Family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NYS FEPS)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q) "FPL"은 미국 보건 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을 의미한다.

(r) "총소득"이란 본 절의 (nn)항 및 (vv)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소득 공제는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87.12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가구의 총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s) "가구"란 CITYFHEPS 세대에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t) "HRA"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u) "HRA 보호소"는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452조에 따라 HRA가 또는 HRA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가정 폭력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v) "JTP"는 HRA가 관리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 당국은 PA 수령자에게 유급 고용 체험 및 경력 개발을 제공한다.

(w) "LINC VI"는 본 타이틀의 7장 C항에 따라 수립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x) "LINC 인증서"는 뉴욕시 규정 68조 7항에 의거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y) "LINC 프로그램"은 이 타이틀의 7장 A 및 B항에 기술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p) "1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 혹은 주거지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z) "최대 월 임대료"란 임대 계약 첫 해에 CITYFHEPS 세대의 임대료가 초과될 수 없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금액이 산정된 본 장의 10-05절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aa) "최대 PA 보호소 수당"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3(a)(1)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 P A 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최대 월 보호소 수당을 의미한다.

(bb) "NPA 가입자"는 CITYFHEPS 가입자이지만 뉴욕시 행정 규정 18편 349.3조 외 다른 이유로 PA 가구원이 아닌 개인을 지칭한다.

(cc) "뉴욕시 사회 복지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DSS"는 HRA와 DHS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dd) "공공 지원"(PA)이란 사회 복지법 § 349에 의거한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 사회 복지법 § 159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규정에 의거한 안전망 지원(Safety Ne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월별 보조금 및 보호소 수당을 포함한 혜택을 의미한다.

(ee) "PA 가구"는 PA 수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가구원을 말한다.

(ff) "Pathway Home"은 본 타이틀의 11장에 따라 수립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gg) "1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 혹은 주거지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hh) "프로그램 참여자"란 CITYFHEPS 세대에 대한 임대 계약에 서명하고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ii) "적격 뉴욕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LINC, SEPS 또는 CITYFEPS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ij) "보조금이 지급되는 적격 고용 프로그램"이란 SET 프로그램, JTP 프로그램 또는 국장이 향후 적법한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kk) "방"은 아파트 내의 개별 방을 의미한다.

(ll)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는 뉴욕시 행정 규정 타이틀 26의 3장에 따라 최대 임대료가 설정된 주거 편의 시설을 의미한다.

(mm) "SEPS"는 본 타이틀의 8장 B항에 따라 수립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nn) "SET 프로그램"은 HRA와 DHS에서 DHS 보호소 거주자의 고용 및 영구 주거지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공동 운영하는 보호시설 퇴소 전환 직업 프로그램(Shelter Exit Transitional Jobs Program, SET)을 의미한다.

(oo) "쇼핑 통지서"는 HRA가 잠재적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 및 최대 임대료를 찾게 해준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주택 검색을 돕기 위해 가구에 제공되는 통지서이다.

(pp) "SRO"는 뉴욕주 복합 거주법(New York Multiple Dwelling Law) 1조 4절 16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독신 입주 세대를 말한다.

(qq) "거리 노숙자"란 (1) 거리 또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며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 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 (2) 센터 또는 임시 주택 환경의 하락으로 DHS 하청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 또는 (3)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업체로부터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리에서 거주, 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에 거주하지 않거나, 방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영구 주택에 배정되었으나 현재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rr) "보조금 지원 고용"이란 뉴욕 사회 복지법 § 336(1)(b)-(c)에서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분야 고용 형태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 분야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ss) "SYEP 프로그램"은 유급 여름 취업 기회가 있는 연령이 14세 ~ 24세 사이인 뉴욕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가 관리하는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tt) "3분기 주택(three-quarter housing) 대책반"이란 용어는 2017년 현지법 13의 1(a)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aa) "아파트"는 SRO가 아닌 개인 주택을 의미한다.

(uu) "뉴욕시 노숙 문제 개선(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in New York City)"이란 Herminia Palacio 보건복지부 장관과 Steven Banks 위원장이 de Blasio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2월 발간한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은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의 발자취를 줄이고, 보호소 제공에 대한 뉴욕시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퇴거 예방, 거리 노숙자 및 영구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에 의존하는 뉴욕시 노숙자 인구를 줄이려는 포괄적인 자치구 기반 계획을 제시한다.

(vv) "불로 소득"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87.1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되고 산출된다. 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 포함한다. 가구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해당 가구가 수령한 제3자의 기부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ww) "비보조금 지원 고용(unsubsidized employment)"은 뉴욕 사회 복지법 § 336(1)(a)에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xx) "재향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10-02 CITYFHEPS 프로그램 운영

HRA가 CITYFHEP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 하위장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 10-03: HRA 또는 DHS 보호소 또는 거리 노숙자가 아닌 뉴욕시 주민을 위한 초기 자격, 신청 및 승인

(a) 거리 노숙자가 아니거나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입주하지 않은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 첫 해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가구 총소득이 FPL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PA)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는 HRA가 해당 가구에게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의거하여 모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3)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PA)을 받아야 한다.

(4) HRA가 8절 또는 이 타이틀의 9장에 따른 HRA HOME TBRA를 포함하여 가구에게 연방 또는 주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면, 해당 가구는 혜택을 신청해야 하고 제공되면 이를 수락해야 한다.

(5) 가구는 FHEPS 자격이 없어야 하고, 본 장 10-08(d)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받았던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6)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HRA의 판단에 의거하여 가구가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고 재향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지난 12개월 내에 퇴거 절차의 대상이거나 퇴거 대상인 뉴욕 시내 소재의 거주지에서 퇴거 또는 거주했거나 해당 가구가 시 기관 또는 담보권 행사로 발행된 퇴거 명령의 결과 또는 뉴욕 주 행정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제18편, 452.9조에 따라 가구가 보호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유 이외에 시 기관이 판단한 건강 및 안전상의 사유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한다.

(i) 뉴욕 사회 복지법의 473절에 따라 성인 보호 서비스 또는 뉴욕 사회 복지법 473-d절에 따른 지역사회 후견인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

(ii)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CITYFHEPS를 사용하게 될 경우 또는

(iii) 과거에 DHS 보호소에 거주했었던 적이 있는 경우.

(C) 가구에 CITYFHEPS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 당국이 추천한 개인이 포함되었고, 국장의 평가에 따라 가구의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DHS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으려면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D) 가구가 HRA 또는 DHS에서 발급한 유효한 LINC 인증서 또는 SEPS 또는 CITYFHEPS 쇼핑 통지서를 받고 있으며, 뉴욕시 행정 규정 제68편 7장 또는 8장에 따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지서가 전달된 이후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가구는 다음의 경우 이 하위 조항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 수혜 자격이 없을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거나 (2) 가구가 FHEPS 자격이 될 경우.

(E) 현재 LINC VI 또는 Pathway Home을 수령 중이고 본 장의 10-04(a)(8)(A)(i),(ii), (iii), (iv)항 또는 (v)항이나 10-04(a)(8)(B)(i)항 또는 (iii)항을 따라야 한다.

(7) 최소 1년 이상 뉴욕시에서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거주자로서, 임대를 위한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이 있어야 한다. 거주지 임대료는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1년 이상은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 단, 해당 세대가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이거나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로서 해당 가구가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기 직전 이곳에 거주했거나 임대료 안정화 또는 임대료 인상 제한법에 따라 연중 임대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가구원 중에 18세 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 임대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b) 신청서는 HRA가 정하는 양식과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승인 시, HRA는 해당될 경우 본 장의 10-06절 또는 10-07절에 따라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계산한다. 본 장의 10-09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의 변동과 관계 없이 첫 해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 10-04: 보호소 거주자 및 거리 노숙자의 최초 자격, 인증 및 승인

(a)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 중이거나 거리 노숙자인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에 대한 인증 수령 자격이 되려면 다음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가구 총소득이 FPL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PA)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는 HRA가 해당 가구에게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의거하여 모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3)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PA)을 받아야 한다.

(4) HRA가 8절 또는 HRA HOME TBRA를 포함하여 가구에게 연방 또는 주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면, 해당 가구는 혜택을 신청해야 하고 제공되면 이를 수락해야 한다.

(5) 가구에 FHEPS 자격이 없어야 한다.

(6)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의거, 가구 구성원이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는 그러한 결정을 낳은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포함 시켜서는 아니된다.

(7) 가구가 현재 DHS 가족 보호소에 있는 경우,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따라 DHS에서 결정한 대로 해당 가구는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을 받아야 한다.

(8) 거리 노숙자이거나 아래의 그룹 A 또는 그룹 B에 속해야 한다.

(A) 그룹 A: 가구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고 그룹 A에 속할 경우: (1) 현재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적격 보호소에 체류하거나 또는 (2) 현재 HRA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음:

(i) 가구에는: (AA)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69.2(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BB) 비보조금 지원 고용 또는 적격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총괄적으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인증을 받기 전 최소 30일 이상 그러한 고용으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된다. 단, 해당 가구에 모범적이고 일관된 근무 경력이 있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매주 적어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구 사항으로부터 국장의 승인 하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ii) 가구는 성인 가구원만으로 구성되고 최소 30일 이상 보조금 지원 없는 고용 또는 보조금 없는 적격 고용 프로그램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ii) 세대주가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거나 월 PA 보조금을 수령하고 문서화된 당사자의 장애에 근거하여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HRA에서 결정한 경우.

(iv)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v)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85.2(b)(5)항에 의거하여 세대주가 PA 근무 활동으로부터 면제 받았을 경우.

(B) 그룹 B: 가구가 현재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그룹 B에 속한다.

(i) 가구원 중 재향군인이 있어야 한다.

(ii) 해당 가구는 폐쇄가 임박한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iii) 가구가 HRA 또는 DHS에서 발급한 유효한 LINC 인증서 또는 SEPS 또는 CITYFEPS 쇼핑 통지서를 받고 있으며, 뉴욕시 행정 규정 제68편 7장 또는 8장에 따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지서가 전달된 이후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가구는 다음의 경우 이 하위 조항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 수혜 자격이 없을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거나 (2) 가구가 FHEPS 자격이 될 경우.

(iv) 가구에 CITYFHEPS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 당국이 추천한 개인이 포함되었고, 국장의 평가에 따라 가구의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체류하는 기간을 단축하려면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b) 보호소 체류 및 제한 규정:

(1) 보호소 체류 자격: DHS 가족 보호소 거주자는 최대 10일의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90일 전 해당 가구가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10-04(a)(8)(A)항의 목적을 위해 보호소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 거주자는 승인 365일 전 당사자가 적어도 90일 이상 뉴욕시 보호소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10-04(a)(8)(A)항의 목적을 위해 보호소 체류 자격이 되어야 한다. 가구에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으면, 보호소를 다른 보호소로 옮긴다고 해서 본 절의 (c)항에 따라 인증서를 받을 자격을 잃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거리 노숙자인 가구는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입소해도 인증서를 받을 자격을 잃지 않는다.

(2) 보호소 체류 자격 제한: 국장은 보호소 체류 자격 대상자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국장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한 날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용 자금 유무 등을 평가할 경우 10-04(a)(8)(A)항의 목적을 위해 통보해야 하는 제한 기

한일을 정해야 할 수 있다. 국장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및 가용 자금 지원 유무에 대한 추가 검토 시 제한 기한일을 철회할 수 있다.

(c) 가구가 본 절의 (a)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HRA는 해당 가구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본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승인 시점까지 본 항의 (a)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CITYFHEPS 인증서를 받은 가구는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뉴욕시 거주자로 적어도 1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세대 임대료는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적어도 1년 동안은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단, 허용 가능 임대료에 대한 정부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정부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에서 임대료 인상이 허용된다.

(e) 승인 시, HRA는 해당될 경우 본 장의 10-06절 또는 10-07절에 따라 가구의 월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계산한다. 본 장의 10-09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월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의 변동과 관계없이 첫 해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 10-05 최대 월 임대료

(a) 본 절의 (b)항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임대 계약 첫 해에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최대 월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최대 아파트 임대료										
가구 규모	1	2	3	4	5	6	7	8	9	10
최대 임대료	<u>\$1,246</u>	<u>\$1,303</u>	<u>\$1,557</u>	<u>\$1,557</u>	<u>\$2,010</u>	<u>\$2,010</u>	<u>\$2,257</u>	<u>\$2,257</u>	<u>\$2,600</u>	<u>\$2,600</u>

(b)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국장은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특정 가구가 향후 90일 내에 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그러한 가구의 최대 월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임대 계약 첫 해에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적용될 수 있는 SRO의 최대 월 임대료는 \$1,047이다.

(d) 임대 계약 첫 해에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적용될 수 있는 방의 최대 월 임대료는 \$800이다. 방 임대의 경우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계약이 공공 지원을 받는 1차 임차인과 체결하는 경우, 임차계약 체결날짜 현재로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는 1차 임차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3조에 따라 1차 임차인이 받는 보호소 수당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 내 별도의 방은 임대주가 직접 임대할 수 없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방이 1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되었을 경우, 뉴욕시 행정 규정 제9편 2525.7절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가 가구의 월 평균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제한 아파트의 방이 1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임대료는 임대주가 1차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이 절의 (a)와 (b)항에 명시된 금액은 뉴욕시 임대 가이드라인 위원회(NYC Rent Guidelines Board)에서 정한 연간 아파트 임대차 갱신에 대한 모든 임대료 조정에 따라 산정된다.

(f) 난방, 온수, 전기 및 스토브가 전기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리용 가스비는 SRO 또는 방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 10-06: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 계산 - 아파트 및 SRO

(a) CITYFHEPS 세대가 아파트 또는 SRO인 경우 월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은 본 절의 (b) 및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대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월 임대료에서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을 뺀 값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이를 세분화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계산하려는 목적으로 LINC IV에서 CITYFHEPS로 이전한 자가 있는 가구는 인원이 2명인 가구로 간주된다.

(b)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 가구원이 PA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승인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가 버는 월 총소득의 30%이다. 단, 갱신 당시 가구에 소득이 없다고 보고 되었으면,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가구 규모에 대한 최대 보호소 수당과 같다.

(2) 가구에 PA를 받는 한 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으면,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다음을 합한 금액이 된다. (A) 승인 또는 갱신 시점에 PA 가구의 월 총소득의 30% 또는 총 PA 가구원의 최대 월 임시 보호소 수당 중 가장 큰 금액, (B) NPA 가입자 월 총소득의 30%.

(c) 10-09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의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d) CITYFHEPS 세대의 승인이 있으면, HRA는 첫 달 임대료와 이후 3개월치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임대주에게 지불한다. 그 후, HRA는 해당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자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한다. 단, HRA가 뉴욕시 노숙 문제 개선(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in New York City)이라는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의 재량에 따라 필요 시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의 추가액을 미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7: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 계산 - 방

(a) CITYFHEPS 세대가 방일 경우, 해당 가구의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승인 당시 해당 가구의 실제 보호소 수당 또는 \$50보다 커야 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해당 가구의 첫 4개월치에 대해 본 절의 (c)항에 제공된 경우는 제외된다. CITYFHEPS 월 임대료 지급액은 최대 \$800까지인 CITYFHEPS 세대의 실제 월 임대료에서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금을 뺀 액수가 된다.

(b) 10-09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의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c) CITYFHEPS 세대의 승인이 있으면, HRA는 첫 4개월치 월 임대료를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해당 가구가 보호소 수당을 받고 있으면, HRA는 첫 달의 월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다음 3개월치에 대한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지불한다. 이후, HRA는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자금이 계속 있을 경우 CITYFHEPS 임차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 10-08: 1차년도 이후 갱신

(a)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연간 4번 갱신할 수 있다.

(1) 가구 총소득이 FPL의 2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실질적으로 잘 따를 경우, 및

(3) 가구가 처음 승인을 받았거나 국장이 본 장의 10-10절에 따라 새 주택으로 이사해도 된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CITYFHEPS 세대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b)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국장은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따르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1.26조에 따라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를 갱신할 수 있다.

(c) 가용 자금 유무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본 절 (a)항의 요건에 계속 부합하고 갱신 당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다면, CITYFHEPS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5년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갱신을 받게 된다.

(1) 세대주가 60세 이상이다.

(2) 세대주:

(A)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B) 지속적으로 월 PA 보조금을 수령하고 문서화된 당사자의 장애에 근거하여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HRA에서 결정한다.

(3)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갱신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d) 가용 자금 유무에 따라, 가구가 CITYFHEPS에 대해 갱신되지 않았다면, 가구가 복원 신청 시 CITYFHEPS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 후 1년 이내에 복원할 수 있다. 해지 후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또는 5년 이상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은 후 CITYFHEPS에서 가구가 해지된 경우, 해당 가구는 정당한 이유에 한하여 CITYFHEPS를 복원시킬 수 있다.

(e) 본 장의 10-11절에 따라 가구가 CITYFHEPS로 이전했거나, LINC VI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서 이전했을 경우, 가구가 LINC, LINC VI, CITYFHEPS, SEPS 또는 Pathway Home 프

그램에 참여한 시점은 본 절의 (a)항에 명시된 5년 제한에 포함된다. 단,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현재 가입 연도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CITYFEPS, LINC VI 또는 Pathway Home에서 이전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해당 가구의 현재 연도는 무시된다. 그러나, CITY 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이 CITYFEPS, LINC VI 또는 Pathway Home에 가구의 가입 후 10개월 이후에 시작되었으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현재 가입 연도는 1년으로 계산된다.

(f) 국장은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연간 갱신 전에 국장은 해당될 경우 본 장의 10-06절 또는 10-07절에 따라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다시 계산한다. 본 장의 10-09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의 변동과 관계없이 첫 해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g)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장의 10-12(e) 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본 절의 (c)항에 의거한 가구의 경우 갱신이 진행되지 않는다. 국장은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 사회 복지부(DSS)의 실수,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 또는 가구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10-09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 조정, 임대료 지원 지급 중단 또는 갱신 전 프로그램 해지

(a) 갱신 전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요청에 따라 국장은 해당될 경우 본 장의 10-06절 또는 10-07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다시 계산한다.

(b) 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가구가 CITYFHEPS 세대를 떠날 경우,
- (2) 임대주가 본 장의 10-14절에 명시된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장의 10-10절에 따라 이사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3) CITYFHEPS에 대한 가구의 참여가 해지되고, 10-13(e) 항에 따라 지불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c)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는 본 장의 10-12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갱신 전에 종료될 수 있다.

§ 10-10 이사.

(a) CITYFHEPS 프로그램의 가구 참여자는 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 거주지로 이사하거나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가구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이사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국장은 이사 후에 신청된 승인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b) 국장은 가구가 방 임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해당 가구가 방 하나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구가 이사하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임대주가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줄 의향이 있을 때는 이사에 대한 승인을 한다. 다른 모든 경우, 국장은 가구가 이사를 하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한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만약 요청된 이사가 현재 임차된 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주택으로 가는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c) 만약 국장이 새 CITYFHEPS 세대로의 이사를 승인한 경우, 국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월 부담금과 월 CITYFHEPS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이 금액은 본 장의 10-09절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신규 CITYFHEPS 세대에 대한 임대 계약 효력일로부터 1년 동안은 변경되지 않는다. 만약 새 주거지에 대한 임대 계약의 발효일이 CITYFHEPS의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기산하여 10개월 이하인 경우, 가구의 금년도 CITYFHEPS 프로그램은 임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만약 새 주거지에 대한 임대 계약의 발효 일자가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해년도의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10개월 이상이고 가구가 CITYFHEPS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가구의 갱신 기간은 임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된다.

§ 10-11 기존 LINC, SEPS 및 CITYFEPS 의뢰인들을 CITYFHEPS로 이전

(a) 국장은 적격 뉴욕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든 가구를 CITYFHEPS로 이전시킨다. 단, 가구의 총소득은 FPL의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국장이 본 장의 10-10절에 의거하여 신규 세대로 이사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린 세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LINC 및 SE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이전은 본 규정의 발효일 이후에 해당 가구의 첫 갱신이 해당 뉴욕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갱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ITYFE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이전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10-12 프로그램 참여자 요구 사항

(a) 해당 가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1) 수입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 (2) 자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 및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액, 최대 월 임대료 및 가구 구성원에 대한 필수 분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b) 해당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이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 (c)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PA)을 받아야 한다.
- (d) 국장이 8절 또는 FHEPS를 포함하여 가구에게 연방 또는 주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면, 해당 가구는 혜택을 신청해야 하고 제공되면 이를 수락해야 한다.
- (e) 가구는 모든 보호소 수당 및 임대주에게 실제로 지불된 제3자 부담금을 뺀 CITYFHEPS 임대료 지원 금액과 가구 임대료의 차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료 지급이 밀리면 당국에 체납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 (f) 프로그램 참여자는 가구가 CITYFHEPS 세대를 떠나면 즉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g) 프로그램 참여자는 퇴거 통지를 제출할 경우 즉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h) 가구는 해당 자격이 되는 모든 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근로소득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 CTC), 자녀양육비세금공제(Child Care Tax Credit, CCTC) 등과 같은 공공 혜택과 세금 공제가 포함될 수 있다.
- (i)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무 배치, 임대주 - 임차인 중재, 재정 상담 및 퇴거 방지 서비스와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 본인의 차용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서비스를 알아보아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정된 본인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현지 본부 사무소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위한 지원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j) 방 또는 SRO를 임대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가구에 추가하고 10-10절에 의거하여 이사할 승인을 요청할 경우 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k) 가구에는 HRA 보호소에 입소하게 되었거나 또는 그럴기 때문에 가족에게 HRA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는 가정 폭력 가해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l) 프로그램 참여자는 CITYFHEPS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뉴욕시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10-13 기관 검토 회의 및 DSS 행정 이의 제기 과정.

(a) DSS 행정 검토 요청권

신청인, 보호소 거주자, 현직/전직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가구 구성원은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HRA가 본 하위장의 조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본 하위장에 의거하여 HRA가 내린 결정사항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신청인이 본 절의 (a)항에 따라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면, HRA는 제기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한다.

(2) 신청인은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개인이 차후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지 6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DSS 행정 심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심리일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 (c)항의 (2)호에 규정된 DSS 행정 심리 요청 기한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c) DSS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전자 수단 또는 팩스, 또는 이의 제기 통지서에 DSS가 명시한 기타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 본 조 (b)항의 (4)호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사항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 권한을 가진 대리인.

(1)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의거하여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를 대표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

서 당사자를 대표하고 해당 케이스 기록을 검토해도 된다는 서면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그러한 서면 승인서는 당사자가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DSS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고지할 경우 위임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DSS가 한 개인 또는 기관이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개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을 고지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DSS가 해당 개인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한다.

(e) 지원금의 지속.

(1) 프로그램 참여자가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을 감액, 제한, 정지 또는 중단하기로 한 HRA의 결정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본 절의 (I)항에 따라 심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 당시 유효한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 액수에 해당하는 Pathway Home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A)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본 이의 제기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의 제기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또는 정책, 또는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하위 조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A) 프로그램 참여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B)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불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4)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세션의 하위 조항 (m)에 따라 추가 이의 제기를 요청할 경우, 심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본 조의 (l)항에 따라 서면 판결문이 발행될 때까지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f) 통지.

DSS는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문의 이 절에 따라 요청한 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본 절에 의거 또는 해당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에 의한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는 해당 CITYFHEPS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있는 경우)의 내용과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할 모든 서류 및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개인에게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찾고 요청하는 HRA 소유의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5영업일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는 행정 심리 사무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르거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HRA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연기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DSS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모든 관련된 중요 증거가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심리 신청자는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DSS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행정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DSS에 연락한 경우, 또는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에 DSS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DSS는 심리 신청자 또는 승인 대리인이 본 항 (1)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HRA는 해당 사건의 일정을 다시 정하게 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결정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만을 위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기록이 된다. (l) 공청회 판결.

심리 사무관은 심리 기록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심리 결정 사안, 관련 사실,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정,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 (1) 결정문 사본은 각 당사자 및 그 승인 대리인(있을 경우)에게 발송된다. 결정문에는 추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해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 대한 서면 통지와 그러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HRA는 심리 사무관의 권한을 넘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또는 본 규정에 위배되는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HRA가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행정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정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 심사 권리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m) 추가 이의 제기.

- (1) 심리 사무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국장을 수신인으로 한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는 심리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심리 사무관의 판결이 DSS에 의해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최소 15일 이내에 DSS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해당 신청인이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기를 원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2) 국장은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HRA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3) 결정문의 사본은 해당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송되는 사법 심사 요청 권리에 대한 안내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해당 시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 (4) 본 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따라 국장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HRA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HRA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0-14 임대주 요구 사항

(a)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아파트 임대차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는 가구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또는 타당한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할 수 없다.

(b) HRA가 월 CITYFHEPS 임대 보조금 및 월 PA 보호소 지급액(있는 경우)을 매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은 CITYFHEPS 세대 임대차 계약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도 당월 CITYFHEPS 세대 임대료에 대해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임대주는 현금 보증금 대신 HRA 보안 바우처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로부터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d) 임대주는 HRA와 가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한 가구에서 다른 가구로 이주시킬 수 없다.

(e) 임대주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세대에 해당 가구가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HRA에 통보해야 한다.

(f) 임대주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HRA에 통보해야 한다.

(g) 임대주, 대상 구내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임대주는 즉시 HRA에 통보해야 한다.

(h) 가구가 CITYFHEPS 세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는 HRA에 초과 지급액을 상환해야 한다.

(i) 임대주는 CITYFHEP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수로 지급되었거나 임대주가 제출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지불된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과다 지급액은 즉시 반환한다.

(j) 임대주는 임대주 요구조건을 위반한 뉴욕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임대주를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 10-15 추가 조항.

(a) CITYFHEPS 임대료 지원은 뉴욕시 행정 규제 제18편 352.3조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PA 보호소 수당 외 다른 보조금과 중복 적용될 수 없다. 단, 보조금의 적용은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효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b) 신청자와 보호소 거주자에게는 적당한 주택을 찾을 책임이 있다. 단, 보호소 담당 직원은 HRA 및 DHS 보호소 거주자가 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돕고 CITYFHEPS 쇼핑 통지서와 함께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판정된 보호소 거주자 및 기타 인원에게 제공한다.

(c) HRA는 CITYFHEPS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을 보관하지 않는다.

(d)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 수령을 위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의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e)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가용 임대료와 관련하여 정부 규정에 따른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 계약을 맺은 LINC 참여자는 CITYFHEPS에 대한 자격 요건을 침해하지 않고 임대료를 정하는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부 기관이 승인한 요율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f) CITYFHEPS 프로그램 등록 가구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줄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된다.

뉴욕시 시장 행정 사무소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CERTIFICATION / ANALYSIS
PURSUANT TO CHARTER SECTION 1043(d)**

규정 제목: CITYFHEPS 신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조 번호: HRA-19

규정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RA)

본인은 뉴욕시 법령 1043(d)절의 요건에 따라, 상기 기술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분석했으며, 상기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음을 증명한다.

- (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 (i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iii) 본 개정 공고된 규정은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s/ ALEXANDRA OZOLS
시장 운영 담당실

2018년 7월 17일
날짜

뉴욕시 법무부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CHARTER §1043(d)

규정 제목: CITYFHEPS 신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조 번호: 2018 HRA 007 (CITYFHEPS)

규정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RA)

본인은 이 담당실이 뉴욕시 법령 1043(d)절에 따라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한다:

- (i) 해당 법 조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
- (ii) 기타 해당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 (iii) 실효성과 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도출한다.
- (iv) 실효성과 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규정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s/ STEVEN GOULDEN
법률 자문 대행

날짜: 2018년 7월 17일